<자료집>

‘가족정책 20대 의제’ 토론회

■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2시

■ 장 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주 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후 원 : 여성가족부

연구책임자 : 황정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집 필 진 : 류연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기획실장)
진미정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진행 순서 >

13:30～14:00	등 록	
14:00～14:10	사 회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장)
	인 사 말	김 경 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10～14:40	주제발표	“가족정책 20대 의제”
		황 정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40～15:50	지정토론	정 재 훈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김 금 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 향 숙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권 정 순 (변호사)
		이 승 미 (우석대 교수, 중앙건강가정센터장)
15:50～16:20	종합토론	
16:20	폐 회	

<차 례>

I. 연구의 배경 5

1) 가족정책 확대의 배경 5
2) 연구의 목적 5

II. 가족정책 20대 의제 9

의제 1.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9
의제 2. 국민연금 출산·양육 크레딧 확대 11
의제 3.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강화 14
의제 4. 가족영향평가제 도입 16
의제 5. 가정내 아동양육지원 도우미 제도 도입 17
의제 6. 양육지원수당 도입 추진 19
의제 7. 지역사회 육아지원망 구축 22
의제 8. 가족돌봄휴가 법제화 및 가정내 돌봄제공자 휴식제공 24
의제 9. 공적 돌봄서비스 관리체계 일원화 및 가조공합 지원체계 구축 27
의제 10.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30
의제 11. 이혼 후 자녀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33
의제 12. 한부모 부자가족 지원 강화 35
의제 13. 미혼부모 자녀양육 지원 37
의제 14.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 개발 40
의제 15. 포괄적인 조손가족지원체계 구축 44
의제 16. 다문화 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 46
의제 17. 생애주기별 가족관계 교육 강화 49
의제 18. 가족관계등록법 개선방안 52
의제 19.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55
의제 20. 가족친화기업 지원제도 강화 57
참고문헌 61

I. 연구의 배경

1) 가족정책 확대의 배경

○ 20세기 후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은 규모나 기능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특히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와 위기가족의 증대,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지칭되는 돌봄의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들어 가족구성원의 부양과 돌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배경으로 하여 특히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가족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공보육의 확대 및 보육예산의 획기적 증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과 건강가정센터의 운영, 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일-가족 양립 지원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결혼이민자 증대에 따른 지원정책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가족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 복지국가들은 20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운영해온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음. 이제 본격적인 도입기에 들어선 한국의 가족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망에 입각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추진되어온 가족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수요에 대한 객관적 예측 및 분석에 기초하여, 새로운 가족정책 의제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의 주요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각 영역별로 향후 5년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20대 정책의제를 선정하였음.

- 가족정책의 공적 인프라 및 추진체계 확립
-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족관계의 평등성 제고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 가족정책 환경 진단 및 의제개발의 기본 방향

가족정책의 환경 변화 및 정책현황	의제개발의 기본 방향
• 한국 가족의 기능적 과부하,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 - 가장 큰 부담은 자녀 양육 - 급속한 고령화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	→ 가족정책의 목적은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첫째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모든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공적 지원을 통해 완화하고, 둘째 가족의 돌봄 기능에 대한 지원과 개별 가족원에 대한 지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지향해야 함 → 중장기적 전망에서 가족정책, 특히 전체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돌봄지원 정책의 체계화 필요 → 가족지원 강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효과
• 가구형태의 다양화 가속 - 2030년이면 1인가구 및 2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통계청 인구 추계) - 이혼·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다각적 지원정책의 필요성 부각	→ 천편일률적인 '가족해체' 방지 대책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가족구성권 및 가족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다양한 가족을 위한 다각적 가족지원 서비스
• 가족정책의 도입기를 넘어서 정착의 과제 - 가족정책의 체감도 및 접근성의 제고 필요 -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제시, 중장기적인 일관성 및 체계성 확립 → 지역사회의 돌봄관련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영아돌봄 및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발
• 여성의 취업 증대를 고려한 가족정책의 필요성 - 20대 후반 여성경활율 70% 시대의 도래 (07. 9월 현재 25~29세 68.9% / 30~34세 53.6%) - 대다수 여성들은 경력지속을 원하며, 경력 지속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형성 및 자녀 양육에 매우 필요한 상황임 (청년실업은 결혼지연 및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한국형 일-가족 양립정책의 실질적 정착이 필요	→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등) 및 교육 강화 (사회교육, 직장내 교육, 교과과정 개편 등) →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강화 → 기업,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가족지원정책의 global standard : 돌봄의 national minimum 보장 +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가족정책 20대 의제		
영역	정책 의제	주요 내용
가족정책 인프라 확립	1.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방안
	2.국민연금 출산· 양육 크레딧 확대	1자녀 출산, 장애인 가족 등으로 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크레딧 기간 확대 등
	3.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강화	건가센터 전국적 접근성 강화 및 돌봄지원 사업 확대
	4. 가족영향평가제 도입	가족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및 척도개발
돌봄의 사회화	5. 가정 내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 제도 도입	시설 보육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별가정 방문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6. 양육지원수당 도입 추진	육아지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7. 지역사회 육아지원망 구축	육아정보 나눔터 설치, 주거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 등 지역사회 품앗이 모델을 확장
	8.가족돌봄휴가 법제화 및 가정내 돌봄제공자 휴식제공	가족돌봄휴가를 법정 유급휴가로 제도화, 돌봄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시휴식 프로그램 개발
	9.공적 돌봄서비스 관리체계 일원화 및 가족통합 지원체계 구축	공적 돌봄서비스 관리 및 전달체계의 일원화, 가족돌봄지원법안 마련,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가족통합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10.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인상 방안 등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11.이혼 후 자녀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이혼 후 자녀양육비 대지급 관련 법률 제정 및 양육비지원센터의 설립(정보제공, 양육비 기준 산정, 지급의무자 소재파악, 상담 등)
	12. 한부모 부자가족 지원 강화	늘어나는 남성한부모를 위한 부모역할 교육기회 제공, 한부모를 위한 부모시간제도 도입
	13. 미혼부모 자녀양육 지원	미혼부모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및 시스템 구축, 보육지원 서비스, 미혼부 책임 법제화 등
	14.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 개발	자발적·비자발적 1인가구의 실태 파악,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여가정보 제공 등
	15.포괄적인 조손가족 지원체계 구축	독립적인 조손가족 지원체계의 근거 마련, 생계비 지원 및 보육·교육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제공
	16.다문화 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가족의 부모역할 증진 프로그램 등
가족관계 평등성 제고	17.생애주기별 가족관계 교육 강화	가족관계 교육을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과 연계, 기업내 가족친화 교육의 의무화 방안 도입
	18.가족관계등록법 개선 방안	'본'·'혼인외의 자'와 같은 가부장제적 잔재 추가 개정, 어머니 성을 따를 경우 복잡한 절차 간소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19.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추진체계 확립, 관련 조례제정,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
	20.가족친화기업 지원제도 강화	가족친화 기업 경영모델 개발(FFI), 기업인증제 실시, 기업내 가족친화 지원센터 운영 등

II. 가족정책 20대 의제

의제 1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해소방안[1)]

가.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음.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제한됨. 특히 일하는 여성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 특히 비정규직, 영세자영업 종사자 여성의 경우 출산을 앞두고 퇴직 압력을 받거나 법정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육아휴직 활용은 일부 기업이나 공공부문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임.

○ 2007년 8월 현재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31.29%에 불과하며, 임금근로자인 여성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절반 이하(47.25%)에 머물러 있음.

<표 1> 성별 고용보험 가입률 –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수 대비 (2007. 8) (단위: 천명)

	고용보험 가입자(a)	경활인구(b)	a/b	취업자(c)	a/c	임금 근로자(d)	a/d
남	5,769	14,177	40.69%	13,675	42.19%	9,235	62.47%
여	3,141	10,037	**31.29%**	9,783	**32.11%**	6,647	**47.25%**
전체	8,910	24,214	36.80%	23,458	37.98%	15,882	56.10%

자료 : 고용보험통계월보 (2007. 8), http://www.keis.or.kr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 8), http://www.kosis.kr

○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 수준에 이르러 남성과 큰 차이가 없는 현실에서, 모성보호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임.

1) 집필자 황정미

<그림 1> 여성의 연령구간별 고용보험 가입율 추이(1996~2004)

주: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율 =(여성 고용보험가입자/ 여성 경제활동인구)*100

나. 정책 방향

○ 일하는 여성의 임신·출산·모성권을 사회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함.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상응하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임신·출산의 권리 및 모성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하는 여성 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의 출산과 초기 자녀양육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정책 과제

○ 저소득층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고용보험료 감면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소득기준을 정해 고용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

○ 고용보험 미적용 경제활동여성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출산수당(산전후휴가 수당)' 지급

-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저소득층 여성의 모성보호와 출산권 확보를 위해 3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의 산전후 휴가 수당을 국가가 지급

○ 중장기적으로는 산전후 휴가·육아휴직을 비정규직 및 비임금 근로자(자영업, 농어민, 학생)로 확대

- 전국민이 가입자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하되 현금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출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또는 고용·건강보험에서 일정 비율을 출원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의제 2 국민연금 출산·양육 크레딧 확대[2)]

가. 현황과 문제점

□ 여성의 국민연금 제도 수급 및 가입 현황

-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여성 비율이 매우 높고, 이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협하는 상황임.
- 현재의 수급자 현황뿐만 아니라 가입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출산·양육 시기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의 출산·양육기 고용경력 단절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임.

<표 2> 공적연금의 성별 수급자와 사각지대

(단위: 명, %)

	60세 이상 공적노령(퇴직)연금수급자					성별 60세 이상 인구(b) 기준 사각지대	
	소계(a)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1-a/b	b-a
남	1,074,990 (72.3)	885,460 (68.8)	126,642 (92.9)	14,878 (91.1)	48,010 (99.0)	59.2	1,558,740 (32.7)
여	412,800 (27.7)	401,191 (31.2)	9,669 (7.1)	1,455 (8.9)	485 (1.0)	88.6	3,207,541 (67.3)
소계	1,487,790 (100)	1,286,651 (100)	136,311 (100)	16,333 (100)	48,495 (100)	76.2	4,766,281 (100)

주: 2005년 기준 60세 이상 남성 노령인구는 2,633,730명, 여성 노령인구는 3,620,341명임. 군인연금은 2004년 자료로 여성가입자는 수급자의 1%로 가정한 것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005;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05; 국방군인연금, 군인연금통계연보, 2004; 통계청 홈페이지, 총인구조사 통계자료

○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 연금 수급자의 경우 가입 기간이 충분치 않아 연금 수급률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령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은 25~29세가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가 30~34세에서 가입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35세~49세

2) 집필자 류연규

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남성은 전형적인 역U자형 가입 형태임.

<그림 2> 연령별 가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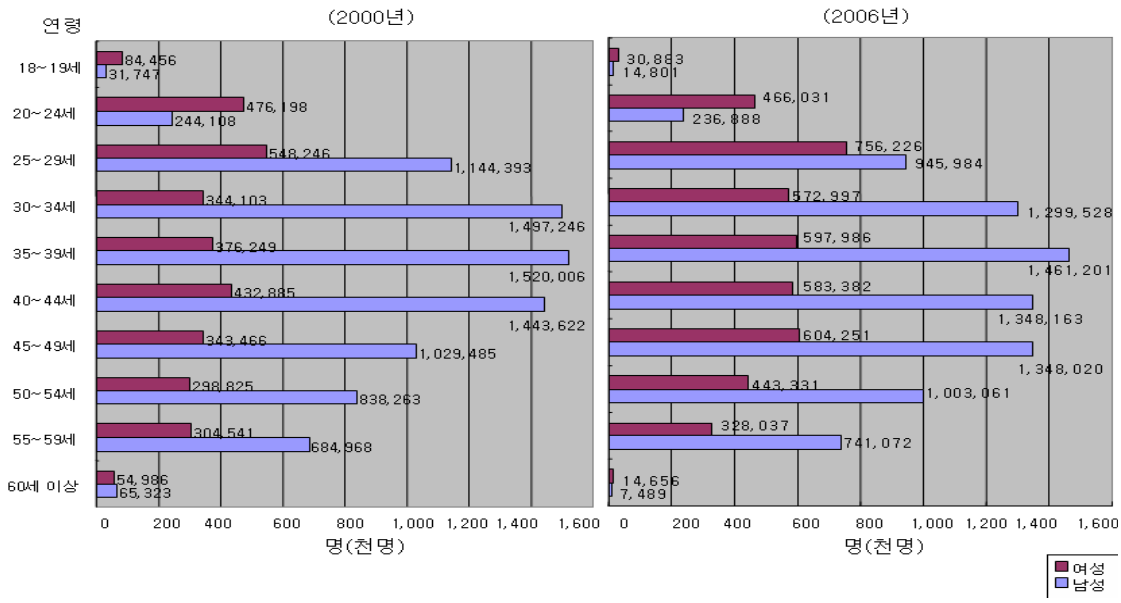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각년도) 재구성, 류연규·황정임·석재은(2007)

□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

-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도 그 목적을 두고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시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
- 그러나 크레딧 제도가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어 2006년 합계출산율 1.08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 감소가 예상됨.

나. 정책방향(총론)

□ 출산 크레딧의 정책 목표 전환

○ 외국의 크레딧 제도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에도 출산 크레딧의 정책 목표는 여성·가족의 '돌봄'에 대한 인정과 기여 기간 보상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어야 하며, 크레딧 제도가 이러한 정책 목표를 지향할 때 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증폭될 것임.

□ 출산 크레딧 제도 내용 확대

○ 출산·양육에 대한 기여기간 인정을 위해 실효성 없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 원칙을 첫째 자녀부터로 전환하고, 1세 미만 자녀 출산·양육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

과 같이 돌봄의 대상을 장애인, 노인까지 점차 확대하고, 크레딧 기간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함.

다. 세부 정책과제

□ 출산 크레딧 명칭 변경

○ 크레딧의 출산 지원적 성격을 강조하는 명칭인 '출산 크레딧'을 돌봄에 대한 기여 기간 인정의 제도 내용을 강조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 크레딧' 또는 '양육·부양 크레딧'으로 변경.

□ 크레딧 적용 대상 확대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크레딧 제도 적용 대상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자녀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함.

○ '돌봄'에 대한 기여 기간 인정을 위해서는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 장애인 가족, 노인 돌봄에 대해서도 기여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크레딧 대상을 확대해야 함.

○ 단, 크레딧 대상의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돌봄에 대한 시간과 물질의 보상 체계가 갖추어지고 국민연금제도가 이와 연계되어야 함. 노인에 대해서는 수발보험 도입으로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으나, 장애인과 아동 돌봄을 위한 급여·휴직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제도적 연계 마련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크레딧 기간 확대 및 근로 유인 장치 마련

○ 크레딧 제도 도입 목표를 '돌봄'에 대한 보상과 기여 기간 인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크레딧 기간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도입된 크레딧 제도는 자녀 1인당 12개월~18개월의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게 되어 있는데, 3년~19년까지 인정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거나 실제 돌봄 기간을 고려할 때 크레딧 기간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외국의 돌봄에 대한 기여 인정 추세를 볼 때,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여 기여 기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돌봄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할 때 근로 유인이 감소되지 않고 보험료 납부와 기여 기간 인정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할 필요가 있음. 아직 크레딧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 마련시 돌봄-근로 관련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또한 경력 단절 및 복귀로 인한 기여액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여 기준 소득이나 급여 기준 소득을 조정하여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의제 3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강화[3)]

가. 현황

□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7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6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 직영·민간위탁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 센터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중앙 - 시도 - 시군구 센터간의 역할분담과 효율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비연속적인 문화행사 등에 사업이 치우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센터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표 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2007. 10월 현재)

계	지자체 직영	민간위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64	12	29	8	13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가족 교육, 가족상담, 문화 활동 등이 많으며 최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돌보미 파견 사업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지역 현실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의 필요성

○가족지원 서비스의 포괄성이라는 가족정책의 기본 취지를 견지하면서도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현실에 맞는 운영 모델을 개발, 지역수요에 맞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자원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

나. 정책 방향

○ 보편적·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위상 확립

○ 수혜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

○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가족정책 네트워크의 확립

---

3) 집필자 황정미

다. 정책 과제

□ 건강가정지원센터 접근성 확대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센터 설치, '가족지원센터', '가족행복센터'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
○ 중앙 - 시도 - 시군구 센터의 역할분담체계 마련

<그림 3> 각급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점역할 – 개념도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수행할 사업을 선정하여 기능을 집중시키고, 다른 사업은 지역의 다른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가족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
- 실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은 지역 센터에서 이루어지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중앙 센터의 지원과 더불어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상급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역할 및 예산지원 등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 적합한 특성화 운영모델 개발
- 현재 지역의 센터 운영은 지자체 직영, 학교법인 위탁, 사회복지법인 위탁, 기타법인 위탁 등 다양한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운영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음.
- 지역 특성에 따라 가족정책 수요나 서비스를 담당할 주체 역량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유형별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지역 건가 센터에 대한 평가 및 실태조사를 거쳐 몇 가지 유형으로 운영 모델을 개발, 지속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각 유형별로 적합한 지원 제공

○ 가족지원 도우미 사업의 다각화 및 전문성 확대
- 현행 아이 돌보미 사업을 산모 도우미, 가족간호 도우미, 가사 도우미 등으로 다각

화하고 수요자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확대
- 도우미 사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인력관리를 위한 자격증 신설,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의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의제 4 가족영향평가제 도입[4)]

가. 배경

□ 가족영향평가(Family Impact Analysis)는 가족정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이 가족의 안정성과 가족관계, 가족성원의 책임수행능력에 미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가족영향평가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타난 결과나, 때로는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가족에 초래되는 측면까지 포괄하여 평가의 범위가 광범위함.

□ 가족영향평가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가족관련 정책과 법, 프로그램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는 체계적 도구로서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을 돕는 정책과정의 일환인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가족전체와 개별가족성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의 인식을 확대시켜줌으로써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2007년 현재 미국 23개주에서는 정책연구소들의 가족영향세미나 (Family Impact Seminar)를 통해 각주의 정책 입안 시 가족초점이 반영되고 가족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 및 분석들이 활성화되고 있음.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에서는 가족영향평가제 도입을 가족정책의 총괄·조정체계 정비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설정한 바 있음.

나. 세부과제

□ 가족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및 척도 개발

○ 현재 미국의 연구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척도들을 보면 구체적인 영역별로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지

4) 집필자 장혜경

만, 개방형의 질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 가족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영역의 평가관점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계량적 가족영향평가 성과지표의 발굴과 분석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의제 5 가정내 아동양육지원 도우미 제도 도입[5)]

가. 배경 및 필요성

□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기관의 보육서비스 만으로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함.

□ 비영리 개별서비스와 영리 베이비시터 서비스, 비영리 부분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이 가정내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력 등 제반 관리가 불충분함.

□ 따라서 이제 정부가 가정내 양육지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돌봄인력을 근로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재정 지원에 대한 고민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 2005년 노동부 조사 결과, 영아를 둔 취업모의 경우 자녀를 돌보는 사람으로 조부모가 70%, 가사대리인이 10%로 조사됨.

○ 취업모 뿐 아니라 미취업 어머니의 경우도 수요가 있음

- 2007년 육아정책개발센터 조사 결과,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취미활동이나 외출 등의 사회활동 때문(39.4%), 일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38.7%)이라는 응답이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남

○ 가정내 양육지원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요구도는 높은 편임

- 2004년과 2007년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조사 결과 영아의 부모 73.2%, 76.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16.4%, 19.3%에 그침.

나. 가정내 아동양육지원 도우미 관련 현황 및 문제

□ 가정내 양육지원 도우미 관련 법·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5) 집필자 서문희

○ 근로와 관련된 법률(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가정내 아동양육지원 도우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영리부분 가정내 아동양육지원 도우미 소개업 관련법으로는 부가가치세법과 직업안정법이 있으나, 이는 세금 납부, 사업 신고, 물적·인적 기준 등에 대한 것으로 베이비시터(도우미)를 관리하고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짐.

□ 비영리 부분의 경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노동부가 지원하는 YMCA 아가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육아도우미 등이 각기 운영되고 있음.
- 영리부분의 경우, 2007년 5월 현재 베이비시터 소개업이 전체 업무의 10% 이상인 소개업체는 93개소로 파악됨. 이들 중 약 37% 가량만이 유료직업소개업소로 등록.
- 이들 회사는 베이비시터는 주로 회원제로 관리하는데, 교육이나 사후관리 등이 사업체마다 다름.

다. 가정내 아동양육지원 도우미 제도화 방안

□ 가정내 아동양육지원 도우미의 성격과 위상
○ 가정내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는 시설보육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정책임
- 부모 부담 비용을 지원할 경우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수준은 민간시설 이용 아동 지원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함.

□ 제도화의 기본방향은 ①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가정내 육아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일정한 유지, ② 가정내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 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간의 형평성, ④ 정부와 민간과의 파트너십.

□ 도우미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에게 개별화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도우미 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은 사업체 관련 단체에서 초기교육,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월 1회 집단 보수교육을 실시.
- 양육지원 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돌보는 장소는 아이의 집을 우선으로 하되, 도우미 자신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도우미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수를 최소 2인으로 제한

□ 사업 주체 및 단체의 위상

○ 국가가 설치한 기구 이외에 영리, 비영리 민간사업체는 법으로 정한 제 기준을 갖추어 정하여 시군구에 등록 - 지원체계로 사업체 기구로 구성된 중앙 및 지방 양육지원 도우미 소개업 사업자 단체를 둠.

- 현재 직업안정법으로 가정내 근로를 하는 사람 소개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 정부의 지원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등록한 비영리 양육지원 도우미 파견 사업체에게 정부 사업을 위탁

- 위탁 사업체에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운영비, 양육지원 도우미의 상해보험, 이용 아동의 배상보험 비용을 등)

의제 6 양육지원수당 도입 추진[6)]

가. 배경

□ 그동안 자녀 양육 지원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기관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는 다양하며, 영아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가정양육도우미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음. 이들에게는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서 부모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 양육지원 서비스 비용 및 지원 요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 외, 2006)에 의하면 가정에서 가정공동 비용 중 자녀1인데 소요되는 몫은 영아 32만 9천원, 유아 31만1천원으로 추정됨.

□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육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자녀를 부모 이외의 누군가에게 자녀 양육을 부탁하는 경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2007년 영아 부모 조사(육아정책개발센터)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하는 액수는 조부모의 경우 평균 34만원, 친인척은 67만원 수준이며 베이비시터와 같은 파견도우미는 87만원, 이웃 탁아모는 55만

6) 집필자 서문희

원 수준으로 조사됨.

○ 노동부(2005)가 조사한 영아를 보육하는 직장여성의 경우에 아이를 본인이 키우지 않고 누군가에게 보육을 부탁하는 경우 월평균 보육비용은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482,000원, 가사대리인에게는 659,000원, 보육시설에는 327,000원임.

다. 자녀양육보조금 지원 현황

□ 현재 중앙정부의 보편적 자녀 양육수당은 없고, 한 부모 가정, 입양 자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제도만 채택하고 있음

- 한 부모 가정 영유아 자녀에게는 현재 월 50,000원
- 입양자녀 양육수당은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아동에 해당되고, 입양된 장애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으로 월 55만 1천원을 지원한다.

□ 많은 지방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

- 지원 대상은 출생순위와 연령에 따라 대상과 지원 수준이 다르며, 대다수의 지역이 셋째아 이상을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5년이 가장 많음.

〈표 4〉 양육비 지원 총괄표

구분	모든 아동 대상			둘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구분 없음	충생순위 구분			
		첫째·둘째아	셋째아 이상		
현금지원					
0~2개월		전남 구례군			
0~9개월					전북 완주군
0~1세	전남 강진군	전북 진안군, 전북 순창군		경북 경주시	경기도 안성시
0~2세	경북 안동시				충북 보은군
0~27개월			전남 구례군		
0~3세	전북 무주군	경북 영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순창군		
0~5세			경북 영양군	경북 울진군	인천광역시 8개구 2군, 강원도 횡성군, 충북 청주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녕군, 경남 남해군
0~6세					경남 김해시
0~10세					전남 함평군
0~12세					강원도 정선군
건강보험 및 의료비					
0~5세	전남 함평군				강원도 강릉시 경북 울진군
0~10세					광주광역시 5개구

자료: 보건복지부(2007). 200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재정리.

□ 세제 지원으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 이용료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 소득에서 소득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 세제 지원은 소득 역진성을 가짐

마. 가정내 아동양육수당(보조금) 지원 방안

□ 가정내 양육지원수당(보조금)의 성격

- 아동수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비기여적, 보편적 가족급여이고,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은 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그 성격이 다름. 그러나 시설보육 지원 확충, 가정내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도에 대한 지원 등과 더불어, 아동수당도 또 지급할 수 있는가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들어가면, 두 제도의 차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의 중복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두 가지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지만, 예산의 제한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학원에 다니는 아동 조부모나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두 정책이 혼합된 형태의 정책도 등장할 수 있음

- 가정내 아동 양육지원수당(보조금)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하더라도 기본보조금이나 차등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임.

- 보육시설 이용 영아에게는 기본보조금이 지원되므로 보육시설 이용 영아는 모두 제외하고, 유아는 기본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차등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는 아동을 포함함. (월 10만원, 바우처 방식)

□ 예산추계

○ 적용대상을 미취학 아동 전체를 할 경우 -약 1조 6634억원이 소요됨

○ 영아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할 경우 1조 1036억원이 소요됨

- 연령별로 0세아부터 우선 적용하면, 도입 첫해에 2009년 4819억원이 필요함..
- 출생순위별로 셋째아에게만 지원하면 소요예산의 약 7%가 필요하고, 둘째아부터 지원하면 소요예산의 약 47%가 필요함. 0세아 셋째아부터 시작하면 337억 3600만원, 둘째아부터 시작하면 2265억 1500만원이 각각 필요함.

○ 각 방안 중에서 소득계층별, 또는 모의 취업여부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의제 7 지역사회 육아지원망 구축[7)]

가. 지역사회 육아지원망 구축의 필요성(배경)

□ 가족의 소규모화로 인해 가정 내 육아 부담 증대

○ 가족의 세대 구성이 단순해지고 규모가 작아지면서 부모가 담당하는 자녀양육 부담은 오히려 상승하였음

<표 5> 가구원수별 일반가구 구성비 및 평균 가구원수 추이(1985~2005)

(단위 : %, 명)

	1985	1990	1995	2000	2005
평균가구원수	4.09	3.71	3.34	3.12	2.88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통계청, 각년도)」에서 계산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에 필요한 가정의 유연성이 약화됨. 양육자의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양육 서비스 필요한 경우 육아의 공백 발생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양육자의 사회 단절 문제

○ 전통적인 확대가족 혹은 다자녀 가족에서는 형제자매를 통해 자녀양육의 간접적인 사회화가 가능하였으나, 자녀수가 적어지면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초 정보와 기술 등을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

□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 필요

○ 확대가족 및 지역사회가 약화되면서 가족과 사회의 연계가 취약해지고 가족의 소외현상이 심화됨

-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은 중요한 사회자본이 됨.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유대와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자본을 축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나. 정책의 방향성

□ 지역사회 내 다양한 풀뿌리 모임 활용

○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학교 학부모 모임 등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있는 풀뿌

7) 집필자 진미정

리 모임들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망으로 활용
○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 공유, 정서적지지 및 도구적지지의 상호 교환 등을 통해 지역사회 관계망을 구축

□ 지역사회 공간 활용
○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실 등 지역사회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육아정보 나눔터로 활용

□단순히 양육자들이 육아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교환하는 장소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품앗이 모델로 발전시킴. 가족 간 활발한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성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 정책 과제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육아정보 나눔터 운영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가족들의 자유로운 공간활용,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교환이 가능한 지역사회 공동육아 모델 구축
○ 지자체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에서 초기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
○ 아동클럽, 플레이그룹 등 아동들의 자유로운 놀이집단을 형성하고 육아정보 나눔터가 지역사회 내 실내놀이터 기능을 하도록 함

□ 주거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
○ 지역사회에서 작은 도서관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초기설치비용 지원
○ 작은 도서관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도서 대출, 공동행사 기획, 공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 가족자원봉사활동과 연계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봉사단 활동과 연계하여 육아정보 나눔터, 작은 도서관 등의 운영을 지원함
○ 한자녀가족의 증가에 따른 형제자매관계 축소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가족봉사단에서 big brother big sister 운동 전개. 즉 육아정보 나눔터를 중심으로 친형제자매를 대신할 사회적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고 활성화함

의제 8 가족돌봄휴가 법제화 및 가정내 돌봄제공자 휴식제공

가. 배경 및 현황

□ 돌봄수요의 증대

○ 2005년 총조사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4,365천명, 9.3%로 나타남. 전 사회적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이외에 평균수명의 증대로 인해 노년기가 매우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돌봄이 필요한 기간 또한 동시에 길어짐을 의미함.

○ 2005년 현재 장애 인구는 총 2,148,7천명이며 출현율은 4.59%임.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2.3%로 8가구당 한 가구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0년의 8.9%에 비해 3.4%p 증가한 것임.

- 장애인 가구구성을 알아보면 부부+자녀가구 33.4%, 부부가구 22.4%, 1인가구 11.0% 임. 장애인 단독 가구는 전체 장애인가구 중 11.0%로 비장애인가중 1인가구 비율 18.0%에 비해 낮지만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집단임. 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비록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돌봄서비스 수요는 다른 가구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이동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형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는 증가시키고 공급은 부족한 구조를 낳고 있음. 특히 전통적으로 돌봄을 담당하던 가족의 돌봄 공급의 감소에 따른 돌봄의 위기가 심화될 전망임.

□ 가족 돌봄 공급 현황

○ 돌봄대상노인 및 돌봄자 현황

-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정경희외,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8]에 의하면 조사대상노인 3,278명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8) - 조사가구 총 9,308가구(노인가구 26.4%, 비노인가구 73.6%)
- 노인개인조사 3,278명

1,191명으로 나타나 36.3%임.

- 이들 돌봄이 필요한 노인(1,191명)을 대상으로 돌봄 실태를 살펴본 결과 63.1%는 전혀 돌봄을 받지 않고 있으며 돌봄을 받는 노인 중 32.3%는 동거가구원으로부터, 4.6%는 비동거가구원으로부터 각각 돌봄을 받고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6년도 가족내 돌봄노동실태조사에서 노인돌봄가구 400가구 중 돌봄자 현황을 보면 배우자가 37%(148명), 며느리가 33.8%(135명), 자녀가 25%(100명)으로 나타남.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부인이 남편을 돌보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는 딸이 더 많았음. 특히 노인돌봄자를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 노인과 장애아동 돌봄노동시간[9)]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구(400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자의 돌봄시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거가족원이면서 노인을 주로 돌보는 주돌봄자의 노인 돌봄시간은 1일 평균 12시간 54분으로 나타남. 취업자인 경우에도 1일 돌봄시간이 9시간 44분으로 돌봄 시간이 매우 장시감이며 그로인한 부담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6세미만의 장애아동을 둔 가구(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1일 돌봄시간은 하루 평균 13시간 16분에 달함. 0-3세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돌봄시간을 비교하면 장애아동이 13시간 49분, 비장애아동이 11시간 44분으로 조사됨. 장애자녀 돌봄으로 인해 주돌봄자인 어머니의 취업중단이 77%로 매우 높으며 취업모의 돌봄시간은 9시간 31분, 비취업모 13시간 55분임

나.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공적 영역의 돌봄지원 서비스 부족

○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노인돌봄가구(전체 400가구)의 경우, 돌봄관련시설에 대해 “이용한 적이 없다”가 84.5%로 다수이며, 유급간병인이나 도우미는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 또한 단 10가구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노인돌봄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율이 매우 저조함(장혜경외, 2006:283 -285)

---

9) 장혜경외, 2006, 「가족내 돌봄노동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참조

○ 이는 지금까지 공적영역의 돌봄서비스는 주요 서비스 대상집단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로 제공되어 왔기 때문임. 즉 공적부조의 범주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공적 돌봄서비스와 비용이 매우 비싼 민간영역의 돌봄서비스로 이분화되어 있어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일과 돌봄책임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 미흡

○ 지금까지 WLB(Work and Life Balance) 정책은 일과 아동양육의 조화를 주요주제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 돌봄공급의 감소에 따라 일하는 돌봄자(working Carer)에 대한 지원서비스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가족돌봄의 책임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면 당장의 소득상실이외에도 장래 연금 등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됨

○ 미국의 기업인 Metlife(1999; Anderson, R. 2006:96에서 재인용)는 고용자인 돌봄자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매년 약 110억4천불에서 290억불 정도가 되며 이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 가족돌봄자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면 15세 이상 인구의 10명중 1명이 가구 안에 돌봐야할 누군가가 있으며 7명중 1명은 가구 밖에 있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고 함.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Survey(European Commission, 2000) 결과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성인들 가운데 단지 6%가 장애인이나 환자, 노인을 돌보고 있지만(동거와 비동거 모두 포함) 돌봄자들의 돌봄시간은 일주일에 21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돌봄자 가운데 경제활동 가능 연령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용상태인데 65세이하의 돌봄자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에 육박함.

□ 가정내 돌봄자를 위한 공적 돌봄지원서비스 부재

○ 지금까지 돌봄서비스는 돌봄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공되어왔으며 돌봄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은 정책대상으로 되지 못했음. 공적 돌봄지원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한 유럽국가에서도 돌봄서비스 공급에서 국가와 사회와 더불어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족돌봄자를 돌봄정책 대상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음.

다. 정책방향

□ **일하는 돌봄자에 대한 지원과 가정내 돌봄자 특성별 휴식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돌봄자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영국의 돌봄자지원법 참조)

라. 정책과제

□ 가족돌봄휴가 법제화

○ 일하는 가족돌봄자(Working Carer)에 대하여 일과 돌봄책임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법정 유급 휴가로 제도화함

□ 가정내 돌봄제공자 휴식 제공

○ 돌봄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시휴식프로그램 개발
-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 완화와 스트레스 경감, 휴식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일시휴식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일시휴식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센터 설치
- 가족 돌봄자의 일시휴식 수요와 일시휴식 서비스 공급 중개기관 설치

의제 9 공적 돌봄서비스 관리체계 일원화 및 가족통합 지원체계 구축[10)]

가. 배경 및 현황

□ 보편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이동의

10) 집필자 김영란

증가,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형성의 개인화 증가 등은 돌봄의 수요는 증가시키고 공급은 부족한 구조를 낳게 됨.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돌봄 영역은 주요한 사회정책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지금까지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책임 하에 있었으며 수급자 등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돌봄서비스이외에 전체 돌봄대상자 및 돌봄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없었음. 그러나 최근 가족돌봄의 위기와 함께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공적 돌봄서비스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돌봄서비스 관련 통합적 관리체계 필요

○ 돌봄서비스 욕구는 돌봄대상자 이외에도 돌봄자 특성, 돌봄대상자 가족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예를 들어 치매노인인 돌봄대상자를 취업자인 돌봄자가 돌보고 있는 중산층 이상 계층의 가족의 서비스 욕구는 치매노인남편을 배우자가 돌보는 저소득층의 노인부부가구의 욕구와 매우 다를 것이며 개별 가족의 특성에 따라 지원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게 됨. 발달장애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을 둔 어머니와 성인인 지체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서비스 욕구 또한 상당히 다를 것임.

○ 이에 지금까지 대상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 체계를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관리체계와 서비스 전달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대상중심의 사업수행에서 오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나. 공적 돌봄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의 공적 사회서비스로서 돌봄정책 부재

○ 돌봄서비스는 보편적인 국가의 공적 사회서비스로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최근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대상집단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공적 돌봄서비스 사업의 중복성

○ 돌봄서비스 사업이 동일한 대상을 놓고 중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비공식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서비스 미흡

○ 현재 돌봄지원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는 부재하며 돌봄대상자와 돌봄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은 전무함

다. 정책방향

□ 돌봄서비스에 있어 가족통합지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공적 돌봄서비스 관리 및 전달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함. 이를 통해 대상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욕구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라. 정책과제

□ 공적 돌봄서비스 관리 및 전달체계의 일원화

○ 가족돌봄지원법안 마련
- 보편적 돌봅서비스 제공 및 가족돌봄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 공적돌봄서비스 통합 관리 기구 설치
- 공적 돌봄서비스 기획 등 전반적인 돌봄정책 마련
- 공적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자격관리 및 교육
- 공적 돌봄서비스의 국가최소표준 마련 및 서비스 평가, 모니터링

□ 돌봄서비스에 대한 가족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가족통합 돌봄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 돌봄대상자와 돌봄자 및 그 가족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맞추어 가족의 돌봄서비스 수요과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공급기관을 중개하는 등 통합적 돌봄서비스 지원센터가 필요함

의제 10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11)]

가. 현황

□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제도상으로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 비율은 1.5%에 불과함)

<표 6> 육아휴직 실시현황: 2002-2006

	계	여성	남성	육아휴직이용자중 남성비율
2002년	3,763	3,685	78	2.1%
2003년	6,817	6,712	104	1.5%
2004년	9,303	9,122	181	1.9%
2005년	10,700	10,492	208	1.9%
2006년	13,672	13,442	230	1.5%
02-06년 증가율(%)	263.3	264.8	194.9%	-28.6%

한국고용정보원(2007: 51)

□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은 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일-가족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집중되어 왔음. 그러나 가족 내의 전통적 성별분업이 달라지지 않은 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날 경우 여성의 무급-유급 노동 이중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음.

- 남성의 양육참여는 보편적 생계부양과 돌봄이라는 가족정책의 궁극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과제임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 수준은 휴직제도의 활용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나타남.

11) 이 내용은 윤홍식, 2007, “아버지할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정책보고서) 을 요약한 것임

○ 현행 육아휴직 급여(50만원)는 2006년 남성근로자 월평균 임금(2,249,024원)의 22.3%에 불과하며, 4인 가구 최저생계비(1,170,422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임.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낮을수록 육아휴직 활용률은 낮아지며 특히 남성들의 휴직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짐.

○ 외국의 경우,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가 활발한 국가들은 휴직기간 동안 소득대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아버지 할당제의 제도 유형은 기간할당형, 인센티브형, 균등분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남성의 양육참여가 가장 활발한 유형은 기간할당형임.

<표 7> 아버지할당제의 유형[12)]

종류	기간 할당형	인센티브 형	균등분할 형
할당방식	부모휴가 기간 중 특정기간을 부에게 할당하는 방식	부모휴가 기간 중 일정기간을 부가 이용하면 부모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방식	부모휴가 기간을 부모 각각에게 균등하게 분할 할당하는 방식
시행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2007년)	핀란드, 이태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2001년까지)	영국, 네덜란드 등

나. 정책 방향

□ 남성의 양육참여를 지원하는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는 가족 돌봄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정책이자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 정책임

□ 기업이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적극 수용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능률 향상과 복지 향상을 동시에 꾀함

- 기업 측면에서도 아버지 할당제 실시는 남성 노동자의 직무능력과 잠재력을 향상시

12) 자료출처: 오스트리아의 '아버지할당제'라는 명시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부모휴가기간의 일정기간 이상을 부가 사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유급부모휴가가 6개월간 연장 된다 (Moss and Deven, 1999: 311). 핀란드의 경우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사용했을 때 1-12일 사이에서 유급부모휴가가 연장된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아버지 할당제를 운용했으나, 2001년 2주간의 아버지 할당제(father quota)가 폐지되면서 (OECD, 2002: 129) 부모휴가가 32주로 확대되었다 (Pylkkanen and Smith 2004). 네덜란드의 경우 유급부모휴가는 없고, 모성휴가 이후 무급으로 시간제 근무만을 허용하고 있다. 모성휴가 이후 6개월간 반일근무가 가능하고, 전일제 근무할 때의 임금의 75%를 보상 한다 (OECD, 2002) (25%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처음 390일(56주)은 80%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반면 나머지 90일(13주)은 정률로 급여가 제공된다. 정률로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은 평균근로소득의 9%정도에 해당 한다 (OECD, 2005). 벨기에, 이태리의 자료는 Haas(2003)를 참고했다.

킨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 아버지 할당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이 휴직 전 남성의 임금 소득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급여 수준의 조정은 유급 시장노동 뿐 아니라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다. 정책과제

□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의 도입

○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달 (4주)의 휴직기간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당제의 도입 ('아버지의 달' - Daddy's month)

- 점진적으로 아버지 할당기간을 2달(8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수준의 단계적 인상

○ 현행 정액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 최저생계비 수준에 근접하도록 단계적 인상방안 마련 - 중장기적으로 정율 급여로 전환(소득대체율 60% 수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확대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수급 방안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노동자, 비임금 근로자층으로 아버지 육아휴직급여제도 확대 방안 검토

○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6개월이상 가입자인데, 2007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83.8%인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 33.3%로 매우 저조함. (특히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인 아버지들의 배제)

○ 현행 제도대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그리고 만약 정률 급여가 도입될 경우)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고소득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모든 남성들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 비가입 남성근로자 및 남성 자영업자들에게도 아버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아버지 할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국가가 할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고려

의제 11 이혼 후 자녀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13)]

가. 현황

□ 이혼가족의 증가와 자녀양육의 문제

- 이혼건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보호·지원대상 이혼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60.7%(2006년 기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의 경우 생계 및 자녀양육의 책임, 사회적응 등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게 되고, 자녀의 생활보장은 공백이 발생함.

□ 현 양육비 지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우선 자녀의 양육비 문제에 관한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음
- 양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 이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스스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부모 가정에서 쉽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오로지 이 문제의 해결이 개인에게 맡겨져 있을 뿐,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음.

□ 양육비 확보를 위한 현행법 강화의 움직임

○ 현행법상 양육비 확보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이행권고, 이행명령 등의 제도가 있지만, 어느 경우든 양육비 확보라는 면에서는 불충분함.

- 이에 사전처분에 대한 집행력 부여, 급여공제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도입, 과태료 인상, 부양의무와 관련된 정기금채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여러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2005. 9. 1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 동 법률안은 양육비 청구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 양육비 이행명령 및 재산조회제도 도입 등 양육비 이행확보규정,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양육비지급까지 국가가 책임질 경우 이혼을 부추기는 결과가

13) 집필자 박복순

되고 예산상의 어려움, 현형 법률과의 중복, 지원업무를 법무부 소관으로 하는 것은 법무부의 성격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있지만, 입법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정책 방향

□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 필요성

-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절차의 개선과 강제집행이나 이행권고 등의 모든 제도를 강화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지급능력이 있으면서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준 후에 양육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의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하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사적인 부양청구권을 실효적인 것으로 함과 동시에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자녀의 생활을 보장하여 간다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동 제도는 부양권리자가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에 의해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협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기도 함.

□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1950년대부터 여러 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다. 정책 과제

□ 가칭「양육비대지급법」 제정

- 이미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과 중복되는 측면과 소관부처가 지원업무와 어울리지 않는 법무부로 되어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임.
- 이에 현행법령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양육비 확보를 위한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상의 내용은 각각의 법에 맡긴 채 양육비 대지급만을 내용으로 가족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양육비 지원센터」의 설립
-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하기 쉬운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양육비 지원센터를「양육비 대지급법」에 근거하여 설립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수집과 정보제공, 기준양육비의 산정, 양육비 대지급과 구상권 행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재파악, 양육상담과 고충처리 등을 기본적인 업무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의제 12 한부모 부자가족 지원 강화[14)]

가. 현황 및 배경

□ 여성의 사회참여와 이혼율의 증가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한부모가 증가하고 있음

- 부자가족의 비율은 완만한 증가세로 95년도 한부모가구의 18%에서 2000년 19.6%, 2005년도 20.9%에 달함

○ 한부모가족은 배우자 없이 가족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주택문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
- 대체로 이혼 후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한부모의 성별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한부모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고 있음에 비해 남성한부모는 '혼자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김혜영 외, 2006:133)
- 특히 남성 한부모들은 여성한부모보다 자신이 전배우자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남성한부모 78.1%, 여성한부모 71.9%), 남녀한부모 모두 이혼 시 자녀양육은 아버지 보다는 엄마가 양육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함(남성한부모 58.2%, 여성한부모 91.3%)(김혜영 외, 2006:117)
- 또한 이혼 후 자신의 삶에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여성 한부모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다소 높음에 비해 남성 한부모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만족은 여성 한

14) 집필자 김혜영

부모보다 남성한부모의 경우가 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남성한부모 44.8%, 여성한부모 52.4%)

○ 여전히 여성한부모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족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로 남성한부모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방식에 있어 한부모의 성별, 연령별, 취업유무 등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식 지원서 비스 개발이 요구

나. 정책방향

○ 남성 한부모는 여성 한부모에 비해 경제적 불안정성의 문제보다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에서 아버지로서의 돌봄 능력을 강화시키는 교육 및 훈련기회의 제공과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한부모로서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자조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해야 함

다. 정책과제

□ 남성한부모의 부모역할교육기회 확대 및 한부모자녀의 심리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남성한부모의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남녀 한부모 모두에게 양부모가족구조에서 한부모 가족으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심리·정서적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부모 변화에 민감한 한부모자녀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실시
- 남성 한부모는 여성한부모와 달리 자녀에 대한 문제발생시 관련 상담소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에서 자녀중심의 상담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실시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남성한부모의 가사노동 관련 훈련 기회제공
- 한부모들은 남녀 공히 사회적 노동과 가사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이 중적 부담을 갖게 됨. 여성 한부모들은 취약한 시장노동능력의 기회가 우선 적으로 필요한 반면, 남성 한부모들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한 기초적인 가사노동의 기술을 습득할 필요 있음
- 자녀와 함께 하는 요리교실을 통해 요리의 비법과 즐거움, 자녀와의 소통 증 진을 모색

- 효율적인 가사관리법에 대한 지식습득 및 남성한부모의 자조 네트워크 형성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남성 한부모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고, 이들의 전담 사례관리를 실시
- 능숙한 부모역할수행이 가능해질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을 전담관리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유사한 한부모 가족의 연계를 통해 남성한부모 가족의 자조능력을 강화
- 일정 수 이상의 사례관리가 가능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남성 및 여성 한부모간의 연계를 통해 양성의 부모역할 조언 및 상호지원협력 기회 제공

○ 한부모를 위한 부모시간제도 도입
- 6세 이하의 한부모 가족이 직장의 해고로부터 보호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일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시간제로 일하길 원하는 경우, 원하는 시간에 일정기간 일할 수 있는 부모시간제도 도입

의제 13 미혼부모 자녀양육 지원 15)

가. 현황16)

□ 미혼모의 특성 및 미혼모의 정책욕구
○ 미혼모의 연령은 16세-25세가, 학력은 고등학교중퇴와 졸업이 가장 많음.
-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음
- 가족사항은 양친이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인 경우도 전체의 1/5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미혼모의 경로 및 미혼부와의 관계
- 미혼부와 현재 관계는 헤어졌다고 한 경우가 60%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미혼 부와 현재 동거중인 미혼모도 있음

○ 아동 양육 시 어려움에 대한 생각 및 필요한 도움

15) 집필자 김영란
16)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1차(2005년 8월), 2차(2005년 9월)조사결과를 요약 한 것임(참고 자료: 허남순 외, 2005"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고, 아동의 장래 문제, 가족과의 문제이었으며 양육시 필요한 도움도 경제적 지원, 가족의 이해, 아동무료위탁, 모자원입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도 경제적인 도움이 있으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고 한 경우가 1/3임

□ 미혼부모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

○ 미혼모 지원 시설의 문제점
- 미혼모 시설 지원에 출산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 미혼모보호시설 입소자는 의료보호 비적용분야의 의료비 발생이 많음에도 특수치료비로 1인당 20만원만 지급되고 개인별 사용액 상계는 가능하나 초과액은 시설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음
- 모자원의 경우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된 기혼여성들이 대부분으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양육모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함

○ 미혼부모의 주거지원 부족 문제
- 양육미혼부모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며 그중에 하나가 주택문제임. 그러나 양육미혼부모를 위한 주택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함. 특히 양육 미혼부를 위한 부자원이나 부자시설은 전혀 없음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문제
- 모부자복지법에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이 없어 양육미혼부모의 의료비 부담이 크며, 아동양육비도 6세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며 아동연령과 관계없이 5만원만 지급되고 있는 등 비현실적인 무제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지정의 문제
- 미혼모의 부모가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거부하고 있어도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로 책정 받지 못하고 있음
-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의 부족 : 미혼모에게 특화된 직업교육과정 개발, 직업연계 등 가능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함

○ 보육료 지원문제
-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개인이나 친인척에게 아동 보육을 의뢰한 경우는 보육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나. 정책 방향

○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미혼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임신기로부터 출산후, 자녀 양육기 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이들의 건강지원, 보육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실시
- 미혼부모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 가운데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미혼부의 양육 참여와 책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녀양육비 지급을 의무화
- 미혼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혼부의 사회적 복귀(학업, 직장) 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다. 정책과제

□ 전달체계 및 시스템 구축

○ 정부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여성가족부 내 전담팀을 설치
- 전담팀은 종합적인 계획, 평가,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증진하고 사업 수행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일관된 통계자료 확보와 미혼부모 관련 종합 대책 수립 및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대함

○ 미혼부모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 미혼 양육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혼 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 사회적, 정서적 자립을 지원함

□ 미혼부모가족 보육 지원 서비스

○ 보육비 지원 및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 보육비 지원의 다각화: 개인탁아, 가정탁아 및 친인척에 의한 보육 인정 및 비용 지원
- 미혼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서비스: 학업, 취업 등 양육미혼부모에 맞춘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아동양육 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

- 부모역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자녀양육 기술 및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 미혼부모가족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상담을 이용하여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 제공

○ 주거지원프로그램
- 생활주기와 임신 및 출산 단계에 맞춘 주거지원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 및 가족생활 위한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의 마련 필요함
- 양육모 그룹홈, 입양 미혼모 그룹홈, 미혼모자보호시설 등 주거시설을 다양화 하고 법적 근거 마련 및 설치 확대
- 대출요건 완화를 통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

○ 경제적 지원
- 안정된 양육 환경 위해 미혼모의 아동 연령 만 3세 까지 국기법 상 미혼부나 모의 부양 의무자 관계 조건을 유예하여 수급권을 확보하도록 함
- 양육 미혼모나 부를 위한 정착금 지원 : 모자원과 같은 수준

□ 미혼부의 책임 법제화
○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 법제화
- 혼인과 관계없이 친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만 18세 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친부의 수입 가운데 일정 비율이 양육비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

○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소송 비용 지원
- 미혼부 상대의 인지 청구 및 양육비 확보 소송의 절차 및 비용 지원
- 미혼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 지원 상담서비스

의제 14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 개발[17)]

가. 배경 및 현황

□ 90년대 이후 한국의 가족은 형태적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1인 가구 또한

17) 집필자 김혜영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980년의 경우 총 가구 수(일반가구) 4.8%에서 90년 9.0%, 2000년 15.5%, 2005년 20.0%로 꾸준히 증가

- 특히 2005년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규모는 전체 3,170,675 가구로 전체가구의 20.0%를 차지하는데, 2000년과 비교하여 42.5% 증가한 것으로 총 가구의 증가율인 11.0%를 훨씬 상회
- 성별로 살펴보면, 2005년의 1인 가구 가운데 여성 1인 가구는 총 1,753천 가구로 약 55.3%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1,418천명, 44.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통계청 자료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30.8%(978천 가구)로 가장 높고, 20대 21.4%(679천 가구), 30대 19.9%(629천 가구), 40대 15.0%(474천 가구)의 순
-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1985년 이래로 10대와 20대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와 30대와 40대의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이러한 1인 가구의 특성은 향후 1인 가구 가운데 여성과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노인 1인가구와 배우자 없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생활실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순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표 8> 연령별 1인 가구(단위: 천 가구, %)

연령	2005	
		구성비
15-19세	44	1.4
20-29세	679	21.4
30-39세	629	19.9
40-49세	474	15.0
50-59세	366	11.5
60세 이상	978	30.8
계	3,171	100.0

출처: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 1인 가구는 형성 요인에 따라 가구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이 상호 이질적임.

○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독신 가구로부터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에 의한 단독가구, 교육 및 취업 등의 목적으로 원 가족과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가구형성요인이 매우 이질적임

- 인구센서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이

45.0%(1,427천 가구)로 가장 많고, 사별 31.6%(1,002천 가구), 이혼 11.8%(373천 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직장 등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별거 11.6%(368천 가구)의 순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유배우 1인 가구를 제외한 비혼 1인가구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50.9%가 미혼 1인 가구로, 이러한 미혼의 비율은 39세 이하의 연령대까지 압도적임. 40세 이후부터 미혼율은 점차 감소하여 50세 이상의 경우 15%로 감소하고 있음
-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제외한다면 1인 가구 가운데 미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비혼 사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표 9> 연령 및 혼인상태별 비혼 1인 가구 분포 및 추이(단위: 가구, %)

연령 \ 연도	1995			2000			2005		
	미혼	이혼	사별	미혼	이혼	사별	미혼	이혼	사별
20세미만	41,190 (100.0)	- (0.0)		46,378 (100.0)	- (0.0)	- (0.0)	44,359 (100.0)	20 (0.0)	- (0.0)
20-29세	460,439 (99.5)	2,438 (0.5)		494,784 (99.1)	4,064 (0.8)	529 (0.1)	663,149 (99.5)	3,230 (0.5)	320 (0.0)
30-39세	208,549 (85.1)	36,522 (14.9)		303,772 (85.3)	47,152 (13.2)	5,336 (1.5)	505,080 (89.7)	54,938 (9.8)	3,335 (0.6)
40-49세	36,738 (35.7)	66,198 (64.3)		84,852 (41.3)	89,279 (43.4)	31,445 (15.3)	159,568 (46.2)	153,822 (44.5)	32,089 (9.3)
50-59세	8,234 (6.0)	129,565 (94.0)		18,915 (10.2)	52,406 (28.3)	114,110 (61.5)	39,797 (14.7)	108,260 (40.1)	122,011 (45.2)
60세이상	2,990 (0.7)	449,549 (99.3)		8,034 (1.2)	25,815 (3.9)	629,844 (94.9)	15,801 (1.7)	52,611 (5.8)	844,246 (92.5)
연령미상	-	-		191 (97.9)	1 (0.5)	3 (1.5)	-	-	-
소계	758,140 (100.0)	684,272 (100.0)		956,926 (100.0)	218,717 (100.0)	781,267 (100.0)	1,427,754 (50.9)	1,002,001 (35.8)	372,881 (13.3)
총계	1,442,412			1,956,910			2,802,636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1995-2005

□ 서구의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와 같은 1인 가구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특히 비혼 1인 가구 가운데 비자발적인 이유로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에 대한 가족형성의 권리보장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비혼의 1인가구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김혜영, 2007), 결혼경험이 없는 1인 가구의 약 75%는 비자발적인 비혼집단, 결혼경험이 있는 비혼자의 약 71%가 비자발적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어 비자발적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

○ 특히 비혼 1인 가구 가운데 여성보다는 남성, 50대 연령집단, 그리고 결혼경험이 있는 이혼이나 사별자 집단, 저소득층의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고립된 생활, 수동적인 여가, 노후에 대한 준비 미흡 등이 뚜렷(김혜영 외, 2007)

나. 정책의 방향

○ 결혼과 가족형성권과 선택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자발적 비혼집단을 제외한 비자발적 비혼 집단의 경우 결혼진입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1인가구로서의 안정된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여가정보를 제공함

다. 정책과제

□ 건강한 결혼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 1인 가구의 형성요인 가운데, 결혼비용이나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의 미비와 결혼제도가 갖는 부담 등을 지적한 응답비율은 23.4%에 달함(김혜영, 2007). 이는 결혼을 위한 주택마련과 혼수비용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가부장적 결혼과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와 가족문화 캠페인 확산
-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평등한 부부관계 확산
- 건강한 결혼예식 문화 홍보 및 결혼문화 이벤트 사업 기획
- 신혼기 주택마련 관련 비용 대출지원 및 세금감면 방안 마련

○ 비혼 1인가구실태조사 결과(김혜영, 2007)에 따르면, 비혼의 사유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결혼할 시기를 놓침(47.1%)'이라는 응답.
·특히 가족봉사, 참여를 기획하는 이벤트와 독신남녀의 만남 이벤트를 상호연계하여 한부모, 조손가족, 국제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동참시킴으로써 봉사인력의 확보와 독신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

□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여가정보제공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이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과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

○ 1인 가구는 몸이 아프거나 노후에 대한 의지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노후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시급

- 노후를 준비하는 경제교육

의제 15 포괄적인 조손가족 지원체계 구축[18)]

가. 현황

□ 가족의 경제적 기반과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15,887,128가구 가운데 조손가구 58,101가구(196,076명)로 전체 가구의 0.36%에 불과하지만, 지난 10년 사이 65%나 증가(1995년 3만 5194가구, 2000년 4만5224가구, 2005년 5만 8101가구)

○ 조손가족의 증가원인으로는 무엇보다 90년대 후반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이혼율과 IMF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고용의 불안정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분석됨.

- ‘ 07조손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부모의 이혼 및 재혼’(45.0%), ‘부모의 사망’(20.2%), ‘부모의 가출 및 실종’ (18.3%)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가출이나 실종에 의한 손자녀 양육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양육이 일시적인 것이기보다는 이들의 최후 보호처이자 조부모사망 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표 10> 손자녀 친부모 현황(n=600, 단위: %)

		어머니 현황						Total
		이혼 후 독신	재혼	부부 별거	행방불명	사망	기타	
아버지 현황	이혼 후 독신	**13.7**	5.2		**12.2**	0.8	1.0	32.8
	재혼	0.7	1.0		1.5	0.3	0.2	3.7
	부부 별거	0.3		0.8	1.0		0.2	2.3
	행방불명	4.2	4.5	0.8	**18.5**	1.8	0.8	30.7
	사망	0.7	5.3		7.8	3.7	1.5	19.0
	기타	0.3	0.3		1.7	1.5	7.7	11.5
Total		19.8	16.3	1.7	42.7	8.2	11.3	100.0

18) 집필자 김혜영

- 조손가족이 손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지원욕구를 보여준 것은 손자녀양육비 및 학비제공(75.7%)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득수준이 2007년 60세 이상 가구주가 구소득의 1/3 수준에 불과한 월평균 70만대의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에 기인(여성가족부, 07)

□ 현재 조손가족에 대한 명문화된 지원은 없으나, 08년도 부터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가능

○ 2007년 10월 개정되어 2008년 1월 18일자로 시행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유일하게 조손가족으로서의 법적인 지원이 보장되고 있음
-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례조항으로 규정
- 따라서 조손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지원의 내용은 여전히 미약

○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과 달리 자립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가족은 한부모 가족보다 훨씬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필요.
- 조손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가사지원, 손자녀학습지원, 손자녀들의 지속적인 상담 및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나. 정책방향

○ 조손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계의 확립을 통해 손자녀들의 안정적인 사회화 과정을 보장

다. 정책과제

□ 독립적인 조손가족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모색

○ 조손가족지원법(가칭) 제정
- 조손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보

○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전담 창구 마련
-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노인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령

연금 및 노인수당 등의 지원금과 함께 조손가족으로 지원받게 되는 다양한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계한 맞춤식 서비스 제공을 겨냥한 지역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 조손가족 서비스지원 플래너 혹은 지원매니저 제도

○ 부모의 부양능력의 확인을 통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조손가족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손가족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지원급여액수 상향조정
- 조손가족의 생계비 지원 강화
-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원받는 손자녀양육비를 현실화시켜야 함.
- 조손가족은 부모의 부재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대안적 가족이라는 점에서 이들 가족에 대한 경제적, 교육, 건강 및 상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건강한 손자녀 성장을 지원

○ 조손가족의 손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방안 강구
-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고충에 대한 상담지원 강화
- 조부모의 손자녀 보육도우미 파견 및 일시보육지원제도 마련
- 저소득층의 조부모들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하지만 지속적인 생계벌이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취학아동들의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무료제공이 필요. 특히 방과후 교실을 통한 이들 손자녀의 과제 및 학습지도는 이들의 교육지원과도 연계될 수 있음
- 손자녀의 학업보충 지원을 위한 사교육의 접근성 강화

의제 16 다문화 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19]

가. 현황

○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2005년 3만 명을 넘어섰음. 국제결혼 여성의 국적이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중국(조선족 포함), 베트남, 일본, 필리핀 4개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통계청과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파악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국내에 체류하

19) 집필자 황정미

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규모는 약 11 만명 정도로 추정됨.[20]

○<여성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 4.) 발표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영유아 보육 지원, 자녀교육지원, 폭력 피해여성 보호 등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 10월 현재 38개소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국회에 계류중임.

○ 그러나 대다수 정책들은 이주여성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습득만을 강조하여'일방적 동화' 정책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제결혼 가족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족 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지원이 필요함.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초기 양육 과정에서 언어 습득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학령기의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에 국한되어 있으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국제결혼도 매년 증가하여 1만 건에 이르고 있음.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 범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그림 4>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국제결혼 추이 (단위 : 혼인 건수)

20)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을 통계청은 19만, 법무부는 7만4천명으로 각각 추정. 법무부 자료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국제결혼 후 이혼하게 되어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제외된 수치임. 통계청 자료는 모든 혼인신고자 수치이므로 결혼 후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가출, 이혼 등 가족 해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국내 체류여성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이혜경,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조성', <차기정부 여성·가족정책 10대 과제>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11. 9.)

나. 정책 방향

○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지원에서 '다문화적' 정책 지향을 강화
-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

○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책 수요 증대에 대비
-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및 서비스를 아동의 연령별로 제공

○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주여성에게 적극적 역할 부여 - 지역의 공적 문제에 결혼 이민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 확대

다. 정책과제

○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예비부부 교육 또는 신혼부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 초기에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비부부 교육 또는 신혼부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실시.
- 남성 배우자가 외국인 아내의 문화적 배경이나 가족관습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가의 문화이해 교육, 기본적인 언어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아내의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
- 부부간 의사소통 증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은 2개 국어로 진행하거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

○ 다문화 가족의 부모역할 증진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운영
- 다문화 가족에서의 부모 역할은 한국인 가족과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되며, 무엇보다 차이의 존중과 역할 분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함. 다문화 가족의 부모역할(parenting)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이 필요함.
- 아동의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차별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운영. (유아기: 아동 언어교육 + 부모역할 상담, 학령기 : 아동의 학교생활 상담 + 부모의 아동양육 상담 등)

○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대상을 남성 이주자와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가정으로 확대 (통합적 이주민 가족 지원정책의 확립)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남성 중심의 가족관에 치우친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모든 이주민 가족 지원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정책 수요의 파악이 필요함
- 특히 남성 이주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경우 결혼이주여성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역별 정책수요 파악이 필요함.

○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브리지(bridge) 프로그램 도입
- 이주여성이 정책적인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프로그램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
- 이주여성의 다문화·다언어 능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역할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외국어 교육 강사로 양성,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의 담당인력으로 채용 등.

의제 17 생애주기별 가족관계 교육 강화[21)]

가. 생애주기별 가족관계 교육 강화의 필요성(배경)

□ 가족 내 세대 차이 및 젠더 차이 증가

○ 가족 및 친족의 세대 구성 확장

21) 집필자 진미정

- 초혼 및 초산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자녀 간 연령차이가 커지게 되었고, 고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족(친족) 내 세대구성이 3세대 이상으로 확장되면서 세대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

○ 새로운 가족 역할 규범과 문화에 대한 젠더 차이
-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참여가 높아지면서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견해가 약화되고 있으며,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근거한 가정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음.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새로운 가족규범을 창조, 수용하는데 젠더 차이가 나타남

□ 가족관계의 다양성 및 복잡성 증가
- 이혼, 재혼, 국제결혼, 국제이주의 증가 현상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짐. 전통적인 가족 역할 규범에 따라 가정생활을 영위하였을 때는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나, 전통적인 역할 규범이 적용되기 어려운 가족 내 다양성과 역동성이 증가하여 가족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화와 재교육이 요구됨

○ 국제이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족, 이주노동자가족, 새터민가족 증가
-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새터민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 새로운 문화권으로의 이주, 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성, 가족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야기됨. 가족불안정성이 특히 높아 가족관계에 대한 심화교육이 필요한 상태임

<표 11> 혼인종류별 혼인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구 성 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	초혼	89.1	88.9	88.3	86.9	86.7	85.0	84.3	83.1	81.2	80.4	**82.8**
	재혼	10.2	10.6	11.6	12.8	13.1	14.7	15.4	16.5	18.2	18.9	**16.7**
여자	초혼	88.9	88.3	87.4	85.8	85.2	83.2	82.5	81.2	78.9	78.1	**81.5**
	재혼	10.4	11.3	12.5	14.0	14.5	16.4	17.2	18.3	20.4	21.1	**18.0**

자료: 2006 혼인통계(통계청, 2007)

□ 가족관계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 행복한 가족관계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는 사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여 교육이나 재사회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동기는 부족한 상태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사회화와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권장하는 접근이 필요함

나. 정책 방향성

□ 가족관계 교육의 접근성 제고

- 예비부부들에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준비교육을, 취업한 부모에게는 사업장에서 부모교육을, 비취업 부모에게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장소, 시간대,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과 연계

- 새로운 가족관계와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이 아동기부터 형성될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 중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활용.

다. 정책 과제

□ 학교 교육을 통한 접근

○ 유아, 초등, 중등교육 교과과정에 가족관계와 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

○ 가족의 다양성, 공평한 가정생활 참여와 역할 분담, 각 세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포함하는 내용의 인식 교육

○ 교사연수과정에 가족관계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교사 교육 실시

○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부모교육을 정례화하고, 취업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다양화하여 제공함

□ 기업 내 교육을 통한 접근

○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내용을 포함한 가족친화교육을 년 중 일회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

○ 가족관계교육을 담당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각 기업, 중소기업청 등을 연계하여 현장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킹 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접근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관계교육의 개발, 보급의 주 기관이 되도록 전문성과 역량 강화

○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가족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가족관계 교육 개발
-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 방임, 폭력,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내용을 가족관계 교육에 포함 강조함

○ 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문적 교육을 담당할 가족관계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보급.
- 상담사와 마찬가지로 강사의 전문성에 따라 자격 관리 필요

□ 가족관계 교육의 의무화 도입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어린이집, 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 이혼 전 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기업 내 가족친화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모색

의제 18 가족관계등록법 개선방안[22)]

가. 현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8. 1. 1. 시행 예정

-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호적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의의

-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은 그동안 민법상의 호주제도와 더불어 헌법상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에 반하는 지적을 받아 온 호적의 편제원리를 기존의 가(家)단위에서 개인별로 전환하고,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입증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의 유출의 방지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나. 정책 방향

□ 가족관계등록법이 지니는 한계점

○ 법률명의 문제
- 신분등록의 기본 단위를 기존의 가(家)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면서도 법률명이나 등

22) 집필자 박복순

록부의 이름에 법의 내용과 맞지 않는 '가족'이라는 용어를 부각시키고 있음.

○ 본적 개념의 형식적 폐지와 사실상의 존치
- 새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상의 본적 개념을 폐지하면서 재외국민의 등록사무의 처리지 기능,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기능, 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의 결정 기준 등의 기능들을 위하여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음.
- 물론 등록기준지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지만, 동 법률 부칙에 의하여 호적이 이미 존재하는 사람의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됨.
- 법 시행 이후 적극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본적 개념은 형식적 폐지에 그치고 사실상 존치되는 효과를 거두게 됨.

○ 본의 기재
-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법적 장치인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동성동본금혼제도 역시 폐지된 상황에서 '본(本)'은 더 이상 어떠한 법률적 의미도 갖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식'을 유지시킬 뿐임.

○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 : 생 신고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음.

○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때의 문제점 :
-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에 따르고자 할 때, 선택의 기회를 혼인신고시로 좁혀 놓고 있는 점, 그리고 혼인신고시와 출생신고시 두 번에 걸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성에 대한 자녀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음.

다. 정책 과제

□ 바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실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새로 바뀌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평등한 가족관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 요구됨.

□ 완전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개정을 위한 노력

- '본'과 '혼인 외의 자'는 부계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양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개념임.
- 호주제는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기존 법속에는 '본'과 '혼인 외의 자'처럼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개념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
-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개정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자녀의 성과 본 관련

-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 혼인신고시와 출생신고시 두 번에 걸쳐 신고해야 함에 따라 절차가 번잡함. 부모의 자율적인 합의로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부계혈통주의를 완화하고자 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 또한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선택의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관계는 부부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인격의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자녀에게도 성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양한 증명서의 세분화

-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한 이유는 양성평등 외에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것도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들이 비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다섯 종류의 증명서로 발급된다고 하여도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에 의하면 여전히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개인의 민감한 사항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기본증명서를 보다 세분화하여 출생증명서라든지 사망증명서처럼 빈번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명서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의제 19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23)]

가. 배경 및 현황

□ 90년대 이후 이혼 및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와 저출산, 노령화로 압축되는 인구학적 변화로 여성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사회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사회환경 구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명시되면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지역사회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는 물론 생활환경의 변화, 즉 근로환경과 생활환경의 동시적 변화가 요구됨을 의미

□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이 가족 고유의 책임을 수행하고 가족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생활공간의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분담을 통한 책임이 공유되어야 함

○ 실제로 그동안 고도성장을 경험한 한국사회는 전인구의 88%가량이 도시에 거주할 만큼 급속한 도시화율을 자랑해왔지만, 사회성원들의 삶의 질 확보에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

- 그 결과 도시의 삶을 향유하는 도시인구와 소비수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나 어린 자녀들이 안심하고 활보할 수 있는 거리조성이나 쾌적한 산책을 보장하는 공원 등의 환경적 여건은 태부족[24)]

○ 최근 들어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급속한 외형적 성장이 아닌 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일상적 삶의 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운동은 ① 쾌적한 지역공동체 ②아름다운 지역공동체 ③특색있는 지역공동체 건설이라는 3대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 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가족형 지역만들기 운동이 하나의 지역운동 형태로 추진
- 강원 영월군 스위트 홈 마을, 충남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 마을, 전남 장흥군 등이 가족형 지역사회로 선정되었으나, 사업내용이나 바향의 구체성은 아직 명료하지 않음

---

23) 집필자 김혜영

24) 도서관과 박물관 1개소당 인구수는 40만명 수준(서구 선진국 1-5만명).. 예를 들어 박물관 1개소 당 인구수는 비엔나 1만 2천명, 뉴욕 5만명, 동경 8만명인데 반해 서울 42만명으로 열악(성경륭, 2006:15)

- 가족친화적인 공동체 형성은 비단 특정 지역에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만들기 운동은 행자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모든 지역발전의 기본적인 모델로 설정되어야 함

나. 정책의 방향

○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는 가족원의 다양한 일상생활을 고려한 공간의 배치로부터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이르기까지 가족친화적인 환경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모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구의 설치와 평가체계는 물론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 기반 마련

다. 정책과제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제정에 따른 추진 체계 확립
-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추진인프라 구비: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도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비
-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시도의 자치단체 내에 가족의 요구를 수렴하는 부서 설치
- 각 자치구에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만들기와 관련한 조례제정
- 교통, 건설, 지역개발과 연관된 부서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관철시키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TF 팀 구성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가족친화기업지원팀과 가족친화지역사회지원팀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운영 전담팀 확보
-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지원 팀의 구체적인 역할 명시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모형제공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에 대한 컨설팅 및 구체적인 자문 제공
·각 지역특색을 고려한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만들기 운동에 참여할 자문단 구성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 조성의 체크리스트 제공 및 평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만들기 시범사업
·매년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평가대회를 축제화하고 시범 사례 발굴 및 확산사업 실시

의제 20 가족친화기업 지원제도 강화[25)]

가. 현황

□ 과제의 배경 및 목적

○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수준 미흡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 저하가 극심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일-가족생활의 양립 불가능성은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 심화의 주된 요인임.

○ 장시간 노동 관행, 야근, 회식 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직된 기업문화는 취업여성은 물론 남성들에게도 최소한의 '가족공유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함으로써 가족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근로자의 가치관이 '일 중심'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 전화되고 있음.

○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기업 문화 존재→ 특히 모성보호제도의 적용이 더욱 필요한 비정규직여성, 비전형근로여성, 자영업여성 등 광범위한 대상이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경향 완화, 직무만족도 제고, 아버지의 보살핌노동권 회복,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일·가정의 건강한 환류 과정 진작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현황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출산 및 양육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직장문화 확산은 미흡

- 시간외근무 등 장시간 근로관행, 회식문화 등이 여전하여 취업부모가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 대기업은 전반적으로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소기업은 법규위반의 경우가 많음.

-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 미흡.
- 특히 주당 46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족생활의 상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25) 집필자 박수미

□ 정책추진 현황

○ 2007년 11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6개월의 경과조치이후 시행될 예정임.

○ 노동부가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뀜.
-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법의 이름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뀜.

○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공공직장보육시설에 관련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
- 특히 휴가제도, 보육시설 외의 가족친화제도의 핵심적 항목인 탄력적 근무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부족한 현실

나. 정책 방향

□ 2003년 여성부의 '전국가족조사' 결과를 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식부문 노동자 440명(남자 352명, 여자 88명) 가운데 출산휴가제도나 주5일 근무제도와 같은 가족친화기업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가 20%에 불과

○ 1990년대 이래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은 축소되어 왔으나 여전히 주당 46시간 내외로서 상당히 길며, 특히 초과근로시간이 긴 특징을 보임.
- 연간 노동시간이 선진국에 비해서 약 600-900시간 정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약 500-600시간 정도 길며,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은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긴 게 현실

○ 외국의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실시 및 포상 사례
- 'Employer of the Year Award'(영국)
- 'National Work and Family Award'(호주)
- '차세대 인정 마크제'(일본) 등 다수

다. 정책 과제

□ 정책 개선방향 및 세부추진방안

○ 직장 및 사회의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이 남녀 근로자 모두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기업과 근로자의 동반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 대한 경제계 분위기 조성

·기업의 일과 가정 양립 정도와 노동생산성·기업성과간의 상관관계 실태조사 실시 및 계량적 분석 연구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FFI 적용 조사) 및 해외사례 발굴 지속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OECD 평균(주 36시간) 수준으로 단축

·가정의 날, 육아데이 지정, 직장내 수유시설 확대 등

○ 기업인증제 실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실시 및 언론 연계 기업이미지 홍보 등 지원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여부, 근로시간 등 환경 조성 등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 부여
- 국정 홍보시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소개 등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지원
-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방안 강구: 장려금 지급,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복지사업 우선순위 부여, 공기업 및 정부산하 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 “기업 공동보육시설”, “지역-기업연계 보육시설” 운용으로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낮은 보급률 및 낮은 활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유연하고 기업-지역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의 디자인 설계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산업단지 중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공동보육시설 제도”를 집중적으로 지원,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모델을 여타 직장보육시설에 파급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다양한 캠페인 지원: 노동자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심 유도

- 기업내 「가족친화 지원센터」 운영
- 가족 친화 기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아버지 일찍 퇴근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역점
- ‘1직장 1가족문화운동’ 전개

·정부·지자체·공기업·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친화문화교육 강사 풀 운영 및 지원

<표 1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단계

연도	’06	’07 ~ ’08	’09 ~ ’10
목표	분위기 조성 →	확 산 →	정 착
추진 사업	○사회공감대 형성 위한 홍보 ○가족친화적 기업 모델 개발 및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간담회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기업 인증제 시행 및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DB·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 ○가족친화적 교육 확대 실시	○가족·기업·지역사회를 연계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 기업 협의회체 구성

참고문헌

김수완(2004). 크레딧 제도 도입방안: 출산·육아 크레딧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김승권 외(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실태 조사. 한국보건시회연구원.

김영란(2007). “유럽의 돌봄정책 동향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한국가족학회 2007 년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

보건복지부(2006), 각국의 아동수당제도(내부자료).

보건복지부(2007), 200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노동부(2005).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

류연규·황정임·석재은(2007). 여성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간 예정.

박영란외 (2003),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 모범사례연구, 여성부.

변화순·최윤정(2004),「가족정책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유계숙·장혜경외 7인 공저, 「가족정책론」, 시그마플러스

윤홍식, 200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 아동양육 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정책 제언’, 참여연대 사회적 돌봄 정책토론회 자료집.

장혜경외 (2003),「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작성」, 여성부

장혜경외 (2005),「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단체연합, 2007, <2007년 대통령선거 7대 영역 60대 정책과제>

장혜경·이상원·홍승아·김영란·강은화·김고은(2006).「가족내 돌봄노동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경희외(2005).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서문희 외(2002).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문희 외(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육아정책개발샌터(미발간)

장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일 가정양립을 위한 취약보육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한지혜(2002). 프랑스에서의 가족지원 및 영아보육제도.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제1호.

日本 社團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團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年의 あゆみ.

日本 財團法人 こども未來財團(2007). ベビーシッター育兒支援事業 實施要領.

Anderson, R.(2006). "Working Carers in the European Union", in The Sarah Harper(ed), Families in Aging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Oxford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6) Employment in Social Care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2004). Social Situation in European Union: 2003.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D'Addio, & Mira d'Ercole(2005). Tra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eies.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27. OECD, Paris. OECD, DELSA/ELSA/WD/AEM.

DWP(2005). Women and Pensions: the evidence.

Gauthier, A. H.(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Clarendon Press, Oxford.

Martin, C. A. Math, & E. Renaudat(1998). Caring for very young children and dependent edlderly people in France: Towards a Commodification of social care? in J. Lewis (ed).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Aldershot. Ashgate. pp.139-174.

Morgan, G. et a.l(2001). Non-Licensed Forms of Child Care in Homes: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State Support.

OECD(2006). Start StrongⅡ.

OECD(2007). OECD family data base.

Ontario(2000). Fact Sheet-Employment Standards Act.

Ooms, Theodora, 1995, "Taking Familoes Seriously: Family Impact Analysis as an Essential Policy Tool", Belgium

Spakes, P, 1983, Family Policy and Family Impact Analysis, Rochester; Schenkman Books, Inc.

Sleebos, Joelle E.(2003). Low Fertility Rate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The Policy Institute for Family Impact Seminars, Washington D.C.

EC 사이트(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missoc2000/missoc_128_en.htm)

Family Impact Seminar State Sites(알라바마, 캘리포니아, 위스콘신주 등 23개 주)

http://www.dhs.ri.gov/dhs/famchild/dcspgm.htm

http://www.michigan.gov/dhs/0,1607,7-124-5453_5529---,00.html

http://netcircus.com/babysitter/guide3.htm